

전주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72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한지영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6. 29.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10.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2021. 10. 18. 접수 제98368호로 경료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B은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한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21. 3. 19. 원고와 사이에 ① 보증금액 127,500,000원, 보증기한을 2023. 3. 17.까지로 하는 보증계약 및 ②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23. 3. 17.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C은행으로부터 2019. 3. 19. 150,000,000원을 대출기한 2023. 3. 17.까지로 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100,000,000원을 대출기한 2023. 3. 17.까지로 하여 각 대출받았다.

2) 위 각 보증계약에서 B에 대하여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에는 B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전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3) B이 대출금 이자납입을 연체하고 2021. 11. 19.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전주지방법원 2021회단1029호)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C은행은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2021. 11. 24. B의 위와 같은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2. 1. 20. C은행에 ① 보증계약에 기하여 127,655,934원, ② 보증계약에 기하여 85,114,784원 등 합계 212,770,71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같은 날 251,500원 및 314,380원의 합계금 565,880원을 회수하였다.

나. B 처분행위

1) B은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자 2021. 11. 19.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전주지방법원 2021회단1029호)을 하였다.

2) B은 회생신청을 하기 한 달여 전인 2021. 10.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0.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즈음인 2021. 11. 15. 현재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합계 2,394,985,749원 상당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5,180,796,592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채권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20. 대위변제를 함에 따라 B에 대하여 구상금 212,204,838원(212,770,718원 - 56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청구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각 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2021. 10. 15.)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시점(2021. 11. 19.)부터 불과 한 달여 전으로 이미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은 2021. 11. 15. 당시 적극재산이 2,394,985,749원 상당인 반면 소극재산이 5,180,796,592원 상당이었는데, 불과 한 달 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2021. 10. 15.) 당시도 비슷한 자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상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에게 2021. 6. 1. 20,000,000원, 2021. 6. 7. 30,000,000원, 2021. 6. 29. 25,000,000원, 2021. 7. 22. 2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물랐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B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